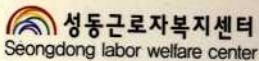


정소년노동자와 권리찾기 알수첩

청소년노동자의 권리찾기 알바알자 알수첩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07(성수2가 3동 300-3) 3층
(지하철 2호선 성수역 1번출구에서 2번출구 방향 60m)

전화 02-497/498-8579
팩스 02-499-8579
홈페이지 www.sdlabor.or.kr
페이스북 fb.com/sdlabor
이메일 sdlabor1@gmail.com



성동근로자복지센터
Seongdong labor welfare center

이럴 때 알수첩을 보자!

◎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알바수첩에는 알바를 시작하기 전 청소년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적혀있어요. 혹시 알바를 구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수첩을 먼저 읽고 알바를 시작하는 것이 내 권리를 찾는 지름길!

◎ 알바를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내 노동시간과 임금이 적정한지 궁금하다면? 일을 하면서 다치거나 성희롱을 당했다면? 알수첩에서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봐요!

◎ 알비가 끝난 후

열심히 일했는데 임금을 못받았나요? 갑자기 해고당했나요? 당황하지 말고 알수첩을 펼쳐서 해결방법과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아보아요!

발행일

2013. 1

제작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집필

공인노무사 이수정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인노무사 최은실 (노무법인 노동과 삶)

만화/일러스트

공기

디자인

이예반



목차 ☆

☆ 알바 달력	6p	07 안돼, 안돼~ 모르면 안돼!!!	59p
청소년과 노동인권	21p	바로알자, 노동재해/4대보험	
청소년노동자가 쟁거야 할 노동법적 권리	25p	08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이렇게~!	67p
01 시작하기 전에 노동조건을 분명하게~! 근로계약	27p	진정, 고소, 고발 등	
02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노동시간	33p	09 청소년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73p
03 하루, 일주일, 한 달, 일 년, 쉬면서 일해야죠~! 휴게, 휴일, 휴가	39p	노동조합과 노동3권	
04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죠~! 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47p	7.5 부록	77p
05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는 안돼요~! 해고	51p	/ 관계기관별 주요기능 및 연락처	
06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성희롱, 언어폭력	55p	/ 노동복지센터	
		/ 청소년 노동인권 단체	



알바달력 sample

알바달력, 이렇게 사용하자!

알바를 시작할 때, 시작날짜를 적읍시다.
받기로 한 내 시급 또는 월급을 적읍시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휴식시간을 적읍시다.
매일아침 일을 하며 힘들었면 일들을 적읍시다.
쉬는 날을 적읍시다.
임금을 받은 날짜를 적읍시다.

시급 4,860 원

2013.2.1 ~ 2013.2.28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메모
(출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동시간)				6:00~10:30	3:00~11:00	3:00~11:00	
(휴식시간)				8:00~8:30	5:00~6:00	7:00~8:00	
(메모)				첫 출근!			주휴!
4.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6. <input checked="" type="checkbox"/>	7.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9.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 <input checked="" type="checkbox"/>	
		6:00~10:30		강기때문에	3:00~11:00	3:00~11:00	
		8:00~8:30		못나감	5:00~6:00	7:00~8:00	
				동료와 씨름		온님 많았다:(
		친구 뷔탁 대타					
11. <input type="checkbox"/>	12. <input type="checkbox"/>	13. <input type="checkbox"/>	14. <input type="checkbox"/>	15. <input checked="" type="checkbox"/>	16. <input checked="" type="checkbox"/>	17. <input checked="" type="checkbox"/>	
				6:00~10:30	3:00~11:00	3:00~11:00	
				5:00~6:00		7:00~8:00	
				사장같아서	죽막치고는		
				못쉬었당	난가셨네:D		주휴!
18. <input checked="" type="checkbox"/>	19. <input type="checkbox"/>	20. <input type="checkbox"/>	21. <input type="checkbox"/>	22. <input type="checkbox"/>	23.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 <input checked="" type="checkbox"/>	
7:00~10:00				샐러드	3:00~11:00	3:00~11:00	
사장님이 빠져서				전화드리고	5:00~6:00		
旷勤				하루 쉬	배는 아파고	온님 엄청엄청	
					이윤 활동고	많이와서 못 쉬:(
25. <input type="checkbox"/>	26. <input type="checkbox"/>	27. <input type="checkbox"/>	28.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00~10:30				
			8:00~8:30				
			대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총 노동시간 $75H \times 4,860 = 364,500$ 원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薪수당 $28 \times 6H \times 4,860 = 58,320$ 원				주휴일 : 월요일			
연장/야간/휴일노동 $(1+10+3) \times 4,860 \times 0.5 = 34,020$ 원				임금 : 시급 4,860 원			
합계 456,840 원				근무시간 평일 6시~10시 30분 주말 3시~11시			

"연소자는 10시 이후에 노동시킬 때는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해요"

암바달력, 이렇게 사용하자!

알바를 시작할 때, 시작날짜를 적읍시다.
방기로 한 내 시급 또는 월급을 적읍시다.
노동시간, 휴식시간을 적읍시다.
매일매일 일을 하며 힘들었던 일들을 적읍시다.
쉬는 날을 적읍시다.
연금보험 날짜를 적읍시다.

시급 [] 원

2013. . ~ 2013. .

청소년과 노동인권



청소년과 아느느이거! 노동!

어렵게 발품을 팔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알쏭이!



친구, 부모님, 선생님 등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다
친구들은 내가 '아이빠'를 샀다고 부러워하는데...



일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그 청소년의 노동은 존중받아야 해!

- 청소년 시기를 행복하고 평화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노동권, 건강권, 의료권, 학습권, 주거권 등이 보장되어야 함.
- 노동을 하지 않고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들이 충분히 보장되어야겠지만 어떤 목적으로든 노동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그 청소년의 노동은 존중을 받아야 해!

어떤 이유로든 일하는 청소년을 차별해선 안돼!

-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짧은 기간 일한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돼!

일하는 사람의 권리는 사업주도 노동자도 함께 알아야 하는 것!

열쇳말 ⑩*

청소년노동자 / 청소년의 경제적 독립 / 청소년 노동권 /
청소년노동 차별금지



청소년은 만 15세부터 일할 수 있어요.

- 법에 정한 청소년노동자(연소노동자)는 만 15세 ~ 만 18세 사이의 노동자!
-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일할 수 있음.

청소년은 일하는 동안 모든 노동관계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 헌법에는 노동할 권리와 노동하는 동안 차별받지 않을 권리(보장하고 있음).
-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권리회복을 위해 싸울 권리인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음.
- 헌법외에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법은 「근로기준법」(근기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등이 있음.

**모든 법의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이상을 보장받아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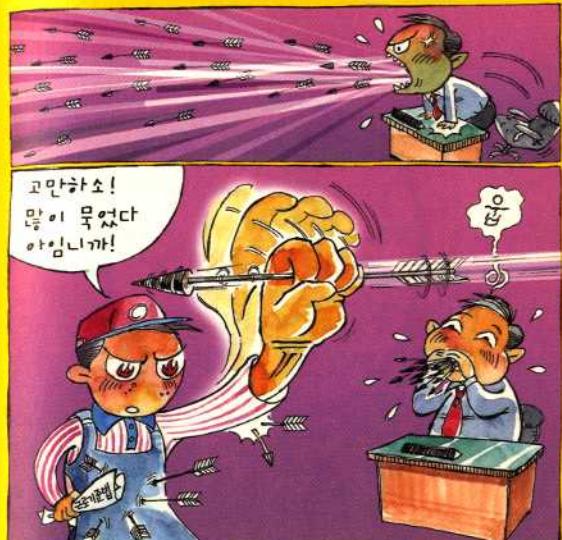
열쇳말

근로기준법 / 헌법 / 노동3권 / 법의 최저기준 /
취직인허증 / 청소년노동자 / 연소노동자



청소년노동자가 챙겨야 할

노동법적권리



01

시작하기 전에
노동조건을 분명하게~!

근로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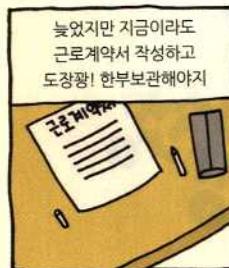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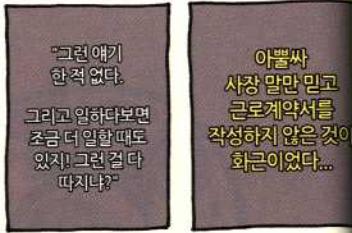


근로계약서는 미리써서 기한부보관

월급날이 되자 원래 받기로 한 임금보다 적게 받은 알쏭이.



그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원래 정한 시간보다 1시간씩 더 하기도 했는데
가산임금은 고사하고 원래 지급하기로 한 임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알았어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

- 근로계약서에는 노동시간, 임금 수준과 임금 지급일, 일하는 기간과 시간, 휴게 시간, 휴가 등 일하는 동안 누려야 할 노동조건을 정함.
-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을 따름.
- 현장실습생은 학교, 회사, 현장실습생이 함께 '표준협약서' 작성!
- 만약 노동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정했다면 그 부분은 무효! 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
-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해서 사용자 1부, 노동자 1부씩, 표준협약서는 3부 작성해서 학교 1부, 회사 1부, 현장실습생 1부씩 보관!

TIP

근로계약서 작성성이 곤란하다면
일한 날짜와 시간 등을 꼼꼼하게 메모!

질식말

근로계약서 / 표준협약서 /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
근로기준법 / 노동조관



부당한 서약은 약속이 아니므로 지키지 약속이 않아요!



약속아님!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한 알쏭이

사장은 알쏭이가 일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일찍 그만둘 수 있으니
'서약서'를 반드시 써야 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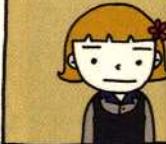


서약서가 뭐 대수겠어?



알쏭이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일을
시작했다.

나만 잘하면 됐지...



아 억울해 힘들어……
확 그만 둘까?
그래도 최저임금이라도
지켜주는 게 어디야..
그냥하자~해~



근데 이거 일방적인데다
폭력적이고 부당한 약속인데
꼭 지켜야 하나?



부당한 서약은 약속이 아니므로 지키지 않아도 돼요!

"지각 세 번이면 하루 일당 깎을 테니까 시간 잘 지켜!"

"한 달 못 채우고 그만두면 월급 없어!"

"다음근무자 구할 때까지 그만두면 안돼!"

- 일을 시작할 때 이런 내용을 정했다면 이 부분은 무효!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임금을 깎을 순 없어요!

- 근로계약을 맺을 때 일어나지도 않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미리 정할 수 없음.
- 손해가 발생했다해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깎으면 노동법 위반!
- 손해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에게 있음.

열쇳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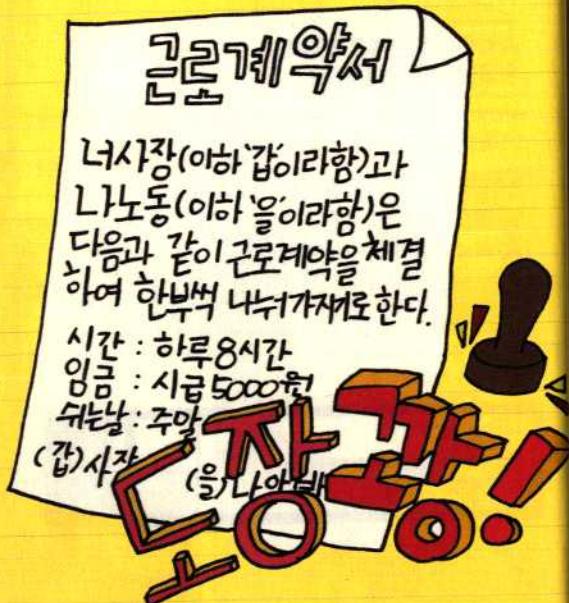
근로계약서 / 부당한 서약서 / 손해배상 /
벌금 / 위약금



“

사업주는 모든 청소년 노동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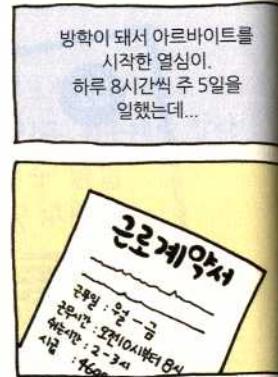
02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노동시간



하루 7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해요!



청소년 법정노동시간 하루 7시간,
일주일 40시간 이내,
연장노동 하루 1시간씩 일주일 6시간 이내만 가능.

-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긴 노동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연장노동은 합의에 의해서 가능하므로, 노동자는 연장노동을 거부할 수 있고, 사용자는 연장노동을 할 것을 강요할 수 없음.

열쇳말

청소년 노동시간 / 청소년 연장노동 /
근로기준법 제 69조



노동시간! 이것만은 기억하자.

- 1 근로계약서 노동시간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해요.
- 2 자신의 노동시간을 매일매일 기록하도록 해요.
- 3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노동, 1주의 합이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은 연장노동이에요. 연장노동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아야 해요.(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 4 연장/야간/휴일노동은 거부할 수 있고, 강제노동을 시키는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 5 법을 위반한 장시간 노동이라도 일을 한 노동자는 정당하게 모든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처벌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는 임금을~)



18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노동 · 휴일노동

노동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해요!

청소년 야간노동(밤10시~아침6시)!
휴일노동(주 15시간 이상 노동시 주휴일 보장)!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심신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야간노동과 휴일노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그 청소년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야간노동 및 휴일노동이 가능.

열쇳말

청소년 야간노동 / 청소년 휴일노동 / 근로기준법 제70조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

조회시간! 교육시간!

옷을 갈아입는 시간!

모두 노동시간에 포함됩니다.

- 노동시간이라 함은 일을 하는 동안 사업주가 여러분을 지시·감독할 수 있는 상태로서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으로 위 시간들은 모두 노동시간에 해당.

열쇳말

노동시간포함 / 대기시간 / 청소시간 /
노동시간조회 / 근로기준법 제50조



03

하루, 일주일, 한달, 일년~!
쉬면서 일해야죠.

휴게, 휴일, 휴가



알바생 노동 주휴수당 챙기자!



왠지 하루종일 싱글벙글인 실속이.
열심이가 물어본다.

한 달 60시간 이상, 한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청소년 노동자도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청소년도 쉬면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 청소년 노동자가 하루 7시간씩 주 5일을 노동하지 않더라도, 한 주를 개근한 때에는 사용자는 유급으로 하루를 쉬게 해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함.
-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음.

열쇳말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 법정휴일 / 유급휴일



주휴일은 사용자와 청소년 노동자가 정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일요일인 것은 아닙니다.

- 보통 미용실은 매주 화요일에 쉬며, 이런 경우 화요일이 주 휴일임. 주휴일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특정한 요일을 유급으로 쉬기로 정하는 것이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노동시간! 이것만은 기억하자.

주휴수당은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 5일·40시간 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100% 주 휴수당으로 지급받지만, 주 5일·40시간 미만으로 일할 경우에는 주 5일·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예시) 하루 6시간씩 3일 근무시 주휴수당

$$\text{한시간 통상임금(시급 } 5,000\text{원}) * (6시간 * 3일) / 5일 = 5000 * \\ 18/5 = 18,000\text{원}$$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야!



알바를 하는데도
연체나 쌩쌩한 실속이.

알바와 학교를
병행하느라 지친 열심이.



아무시간이나 휴식인가요??
옴짝달싹 휴식사용은 이제 그만!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휴식!!

휴식시간 체크포인트

- 4시간 이상 노동시 30분 이상 8시간 노동시 1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 휴식시간은 노동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휴식시간은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너무 짧게 나누어 주거나,
지나치게 길게(꺾기) 주어서는 안 된다.

열쇳말

휴게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 대기시간 / 휴식시간



한 달에 한번,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연차휴가!

1년 미만을 노동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음.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 계속 노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한 달 60시간, 한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한달 개근시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음.

- 계속 노동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노동일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 근로에 비례하여 계산됨.)

노동일의 80% 미만을 출근한 경우 1년 미만 근속한 노동자와
동일하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음.

열쇳말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단시간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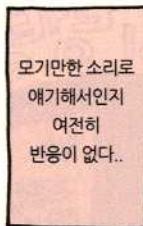
04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죠~!

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죠!



임금 지급에도 원칙이 있어요!

- 임금을 주기로 한 날을 정했다면 꼭 지켜야 함.
- 나이가 어리다고 보호자에게 주면 안되고
임금은 일한 노동자에게!!
- 피자 30판, 치킨 20마리로 임금을 줄 순 없어요!
쓸 수 있는 돈으로!!
- 실수를 해서 손해를 입혔다고 임금을 떼고 주면 안돼요!

임금체불이 있는데 일하는 동안이라 깔끄러워요!

- 임금을 적게 받거나 '벌금' 등으로 깎았다면
적게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알바'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아요!

- 시간제나 월, 수, 금 격일로 일했다하더라도 1년 넘게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2010년 12월~2012년 12월 50%,
2013년 1월 1일 이후 전면 적용)

열쇳말 ⑩
임금 / 임금지급 원칙 / 퇴직금 / 임금체불



임금에도 최저선이 있어요! (최저임금)

노동자는 일하는 동안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야 해요!

- 나아가 어려도, 짧은 기간, 단시간 일해도 최저임금은 꼭 지켜야 함.
-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습기간이라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어요!

- 미리 수습기간을 정하고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그 기간 동안만 10% 삭감 가능
-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이었다고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음.
- 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기간이라도 감액할 수 없음.

2013 최저임금

구분	시간급	
모든 산업	4,860원	
10% 감액 적용	◎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액 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	4,374원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

이럴 땐 최저임금과 받은 시급의 차액만큼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질문

임금 / 임금지급 원칙 / 퇴직금 / 임금체불

05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는 안되요~!

해고



정당한 사유에는 해고는 안돼요!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로 배달 하다
불쑥 뛰어 나온 사람을 피하려다 다친 알쏭이



노동자가 잘못을 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곧장 해고할 수는 없어요!

-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건 부당해고에 해당함.
- 노동자가 계속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장 맘대로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없음.

노동자가 일과 관련한 부상·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치료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로 해고할 수 없어요!

해고의 이유가 정당하다 해도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해요!

- 사업주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들어 30일 전에는 미리 얘기해야 함.
(30일 전에 얘기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미리 해고의 절차를 정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지켜야 함.

설명말
부당해고 / 해고 절차 / 해고 예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를 찾아가세요

-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해고 뿐 아니라 부당한 징계,
인사발령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 부당해고 등을 당한 노동자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보세요.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무효소송,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을 할 수 있음.

부당해고임이 밝혀지면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질의답변

부당해고 구제 / 부당해고 신청 / 노동위원회



06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성희롱, 언어폭력, 폭행



체크함목

- 성희롱은 예 아니오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것만이다.
- 성희롱은 예 아니오
상사가 하급자에게 하는 것만이다.
- 내가 성적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다면 예 아니오
성희롱이다.

부끄러워마! 감자마! 성희롱OUT!

뭐?? 그건 성희롱이지.

성희롱? 그건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거
아니야?

모르는소리~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것도 성희롱이야.
특히 성희롱은 바로 내가
어떻게 느끼나가
가장 중요하지!

그건 너무 주관적이지 않아??
내가 오버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건 주관적인게 아니라
성적불쾌감과 모욕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거야

실속아~

어제 매니저가

'현수야! 이리 와 어깨 좀 주물러봐~
하면서 불렀는데 컴퓨터에 아동을
들어놓고 보는거야 완전 소름 돋더~'



성희롱이란

"내가 느끼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말합니다.

- 성희롱인지 여부는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모욕감'을 기준으로 판단함. 객관적 기준 또는 사회적 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의 고통이 쉽게 무시될 수 있기 때문.

성희롱은 남자상사가 여자에게 하는 것?

- 성희롱은 상사에게 뿐만 아니라
동료, 하급자, 고객에 의해,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하는 것도
모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면 어디에 도움을 청하지?

- 노동자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성희롱을 제기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노동위
원회에 구제신청을, 그리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
상을 청구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음.
- 그러나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금전보상이나 휴직 등에 의해 복구되기 어려우므로,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

열쇳말

성희롱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 성희롱 피해구제 ▶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 성희롱 손해배상 /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성희롱이 제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용기를 갖고 싶다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

- 싫다고 분명히 말하자
- 기록을 남기자
(날짜, 시간, 장소, 말이나 행동의 내용, 자기의 느낌, 주위 상황, 증인)
- 도움을 청하자.
(노동부,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 평등의 전화)

청소년 노동자!

우리는 인격을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어요.

- 사업주의 욕설 및 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노동청 또는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음.
- 사업장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증거(같이 근무하는 노동자의 증언(확인서, 녹음기록), 현장 녹화·녹음을)를 모아 관할 노동청 또는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음.

열쇳말

청소년 일바 폭언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
청소년 노동 폭행



07

안돼! 안돼~모르면 안돼!!!

바로 알자, 노동재해/사태보험



체크함

알바나 현장실습생은 일하다 다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보상신청을 할 수 없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산재보상 신청을 할 수 없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일을 하다 그만두면 산재보상 신청을 할 수 없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내가 실수하다 다쳤어도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몰라서?
길 모르는
사업장에서
오늘내일짜기



일을 하다가 다치면 노동자의 과실이 있었다 해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청소년 노동자 및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산재가 적용됩니다.

- 산재란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질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 노동자가 고의로 다치거나 스스로 상처를 낸 것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도!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동의해 주지 않아도!
다친 청소년 노동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 노동자를 1인 이상 사용한다면 모든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 산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어도 산재보상 신청됨.

열쇳말

산업재해 / 산재 / 산재신청 /
산재요건 / 산재 보상금 오해



산재보상신청은 부상/질병 등이 발생한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 부상/질병등이 발생한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 조사관과 상담을 할 수 있음.
- 신청 시 요양급여신청서(초진소견서 포함), 재해발생경위서 (업무 및 부상/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 설명), 목격자 진술서, 119구급증명원, 의무기록지 등을 준비.

설정말

근로복지공단 / 산재 보상 신청
요양신청 / 장해신청 / 유족급여신청



산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하자

-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만큼 큰사고라면 119 등을 통해 병원으로 즉시 호송한다. (일반차량 NO!!)
- 병원진료시 일을 하다 다쳤음을 강조해서 설명한다.
- 산재가 발생한 시간과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는다.
- 가급적 사고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놓고, 사고를 목격한 증인을 확보한다.

근로복지공단

관할 및 연락처

kcomwel.or.kr

지사명	관할구역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중구, 종로구, 성북구	02)2330-9476
서울강남지사	강남구	02)3459-7139
서울서초지사	서초구	02)6250-7226
서울동부지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02)3433-1304
서울성동지사	성동구	02)460-3572
서울서부지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2077-0150
서울남부지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02)2165-3260
서울북부지사	동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02)944-8251
서울관악지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2109-2205

첨산느낌 온느낌 사대보험 가입할수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 열심이..
실속이가 다가간다.



사장님! 내가 일하는 시간이
좀 많으니까 4대보험에 드는게 좋겠다고
하는데, 4대보험에 들면 월급이 줄잖아.

4대보험은 내가 일한다는 증명이자
권리야.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
담이고, 우린 18세 미만이니까 고용
보험으로만 내면 돼.



2013년 4대보험 요율

	사업주	노동자	합계
국민연금	4.50%	4.50%	9.00%
건강보험	2.95%	2.95%	5.89%
장기요양(건강보헤판의)	6.55%	6.55%	-
고용보험(150인 미만)	0.8%	0.55%	1.25%
산재보험(업종따라 상이)	전액부담	-	-

4대보험이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 4대보험은 사회보장을 위한 공적보험으로서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임.

청소년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의 적용을 받음.

-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않으며,
- 부모 또는 형제가 직장 또는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부양자로서 기 적용되는 청소년은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 고용보험도 소정노동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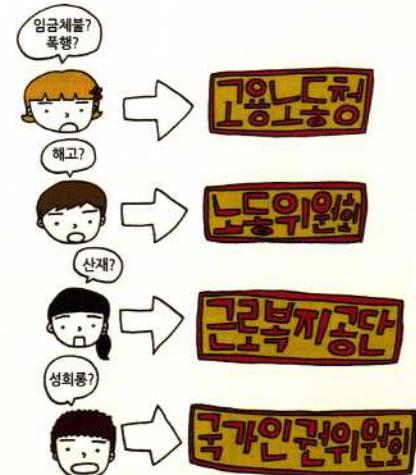
설치 및 ⓘ *

사회보장기본법 / 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고용보험(실업급여)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이렇게~!

진정, 고소, 고발 등



그리고
노동복지센터·평생학습센터·인력사다리센터
안심안내센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알게 된 달쏭이
달쏭이는 씩씩대며 사장에게
최저임금이 4860원이니
시간당 860원씩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일을 시켜준 것만도
감지덕지지 무슨 최저임금이고,
주휴수당이야!!! 배~~째!!
자꾸 그런 소리 할까면 그만둬!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받았다면?

-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했다면,
제 때 받기는 했는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임금 체불!
- 사업주에게 법에 정한 기준을 지킬 것을 요구해서
해결을 모색해 보고,
사업주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해결 모색!

노동부 홈페이지에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여 시정을 요구!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inwon.moei.go.kr),
관할 노동청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진정(고소) 접수.
- 진정서를 접수 받은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노동자를 조사.
-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을 지시.
- 만약 사용자가 이 지시를 어기게 되면 형사 처벌.

TIP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하기

www.minimumwage.go.kr(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학교에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있다면 활용해보자!

- 사업주에게 혼자 대응하는 것이 곤란할 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기 전에 상담하고 싶을 때,
학생인 경우 학교에 있는 안심알바신고센터를 활용해 보자!
안심알바신고센터는 직접 노동부에 접수하지 않고
간편한 해결이 가능함.
- 우리 학교에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있는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함(moel.go.kr)

열쇳말

진정접수 / 안심알바신고센터 / 근로감독관 / 임금체불 / ▾
권리회복 구제절차



사업주가 노동부의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 법원에 별도로 체불 임금의 지급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해야 함.
- 고용노동청에서 확인된 임금체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국번 없이 132)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변호사 선임 가능.

그밖에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부당해고, 산재를 당했을 땐?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폭행	고용노동청 (moel.go.kr)
손해배상청구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scourt.go.kr)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nlrc.go.kr)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kcomwel.or.kr)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를 때는
제일 뒤 '부록'의 상담센터 등과
상담을~!!

열쇳말

청소년노동인권 상담 / 부당해고 / 부당대우 / 성희롱 / ▾
언어폭력 / 고소



09

청소년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노동조합과 노동3권



어서녀
온느노
느자하
느님
마흔이다!
느를

공원에서 선전전 중인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에 잠긴 열심이..



어제 수연이가
퇴근하는데 사장이
더 일하라는거야.
수연이가 막차시간
다 돼서 못한다니까,
사장이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



헐~
어이
없다.
그치.. 근데 나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
싶어서..



우리가 혼자라서
사장이 함부로 해.
그러게 헤



우리도 여럿이 힘을 모아
노동조합 같은걸
만들어서 한 목소리를 내면
달라지지 않을까?
저기 가볼래?

노동3권이란

단결할 권리, 교섭할 권리, 행동할 권리를 말합니다.

- 노동자들이 집단을 형성할 권리가 바로 단결할 권리이며,
이러한 단결체가 노동조합임.
-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그 성과물이 단체협약서임.
-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업무를 제공하지 않고
요구를 관찰하기 위하여 행동할 단체행동권을 갖음.

일하는 청소년도 노동3권의 주체이므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 헌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함.
- 청소년, 외국인도 노동하고 있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노동자로서 노동3권의 주체이며,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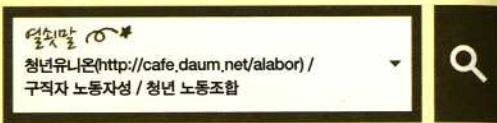
열쇳말

헌법 제33조 / 노동3권(근로3권) / 단결권 / 노동조합 /
단체행동권 / 단체교섭권



일하는 청년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있습니다.

- 청년유니온은 15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라면 고용형태(실업자, 비정규직, 정규직, 취업준비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세대별 노동조합”.
- 고용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을 백수노조라고 하면서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2011년 법원판결에 의해 범내노조로 인정받음.



위키백과 - 청년유니온

청년유니온(youth community union)은 대한민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이다. 2010년 3월 13일 창립되었다. 창립당시 조합원수는 60여 명이었다. 초대 위원장은 김영경이다. 현재 2대 위원장은 한지혜이다. 만 15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비정규직, 정규직, 구직자, 일시적 실업자 등 청년 노동자가 구성원이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조합원수는 210명이다. 본부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134 태웅빌딩 203호 청년유니온 사무실이다. (출처: 위키백과)

부록

관계기관별 주요기능 및 연락처

노동복지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단체

관계기관별 주요 기능 및 연락처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폭행, 최저임금, 산재은폐, 부당 노동행위 등 각종 노동법 위반 진정·고소를 하는 곳
- 신고 홈페이지(고객센터) : www.miwon.moei.go.kr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종로구, 중구, 서초구, 동대문구) 02)2231-0009

서울강남지청 (강남구) 02)584-0009

서울동부지청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02)403-0009

서울서부지청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02)713-0009

서울남부지청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02)2639-2100-7

서울북부지청 (성북구, 종로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02)950-9880-1

서울관악지청 (구로구, 관악구) 02)3281-0009

고용센터

- 고용보험 문의 및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곳
- 홈페이지(고용보험서비스) : www.ei.go.kr

서울고용센터 (종로구, 종로구, 성북구) 02)2004-7301

서울강남고용센터 (강남구, 서초구) 02)3468-4794

서울동부고용센터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02)2142-8924

서울서부고용센터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02)2077-6000

서울남부고용센터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02)2639-2300

서울북부고용센터 (동대문구, 종로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02)2171-1700

서울관악고용센터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02)3282-9200

근로복지공단

-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신청을 하는 곳 (홈페이지 : www.kcomwel.or.kr)
-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등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는 곳
- 홈페이지 : www.nirc.go.kr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02)541-1193, 5-7

· 중앙노동위원회 02)3273-0226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침해, 차별시정, 성희롱, 장애인 차별 등에 대해 진정 신고하는 곳
- 홈페이지 및 연락처 : www.humanrights.go.kr
02)2125-9700

국민권익위원회

-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을 하는 곳
- 홈페이지 및 연락처 : www.acrc.go.kr 1588-1517

청와대 국민신문고

- 부패방지, 공익침해, 고충처리 등을 하는 곳
- 홈페이지 : www.epeople.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법률구조 등을 하는 곳
- 홈페이지 및 연락처 : www.klac.or.kr 02)632-0132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 학생인권, 노동인권 상담할 수 있는 곳
- 홈페이지 및 연락처 : www.sb-rights.or.kr 02)3999-080-5

노동복지센터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서대문구 홍은동 48-84 유진상가 2층
(지하철 3호선 홍제역 인근)
www.sdmworker.org 02)395-0720

홍제

구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구로구 구로3동 851번지 한화비즈메트로 213호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labor.guro.go.kr 02)852-7339

마들

노원노동복지센터

노원구 상계동 한글비석로 530
(지하철 7호선 마들역 구내 지하1층)
www.nowonhope.org 02)3392-4905

성수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성동구 성수동2가 300-3 베컴빌딩 3층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인근)
www.sdlabor.or.kr 02)497-8573

청소년노동인권단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cafe.daum.net/nodongzzang

인권교육센터 들

www.dlhre.org

02-365-5412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asunaro.or.kr

070-4228-1908

청년유니온

cafe.daum.net/alabor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cafe.daum.net/Life2010

인권운동사랑방

www.sarangbang.or.kr

02)365-5363

알바연대

alba.or.kr

02)3144-0935